

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선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1.

발 의 자 : 박선원 · 최민희 · 박균택
조인철 · 김병주 · 김성희
황명선 · 진성준 · 김준환
장종태 · 권향엽 · 이춘석
임문영 · 전진숙 · 박해철
강준현 · 이광희 · 민병덕
주철현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따르도록 하고,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. 그러나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조성하여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거점으

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현행 방식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사업의 재원에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,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아울러 이 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,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6조 제1항, 제23조 및 제24조).

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”를 “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”으로 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등에 관한 특례)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다.

1. 종전부지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경우

2.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

② 사업시행자는 국방부가 제1항에 따라 양여한 종전부지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,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 및 국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
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③ 국가는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 체결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양여할 종전부지의 가액이 기부할 대체시설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원활한 이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,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⑤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, 제1항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 양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.

1. 합의각서(안)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: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감정평가
2. 최종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재산평가: 제1항제2호의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한 금액

⑥ 국방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상의 기한 내에 광주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광주 군 공항 대체시설의 기부 및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24조(이행강제금) ①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명령

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전사업 합의 당시 군 공항 대체시설 가액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국방부장관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이전사업의 방식 등) ① <u>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</u> 을 따른다. ② ·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이전사업의 방식 등) ① <u>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-----.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23조(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등에 관한 특례)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시 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 를 양여할 수 있다. 1. 종전부지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개발계 획의 대상이 되는 경우 2.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종 전부지를 「국유재산법」 제 2조 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 에 매각할 것이 예상되는 경 우 ② 사업시행자는 국방부가 제1

항에 따라 양여한 종전부지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, 사업 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 및 국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③ 국가는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 체결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양여할 종전부지의 가액이 기부할 대체시설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원활한 이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,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⑤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, 제1항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 양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.

<신 설>

1. 합의각서(안) 작성을 위한
재산평가: 양여시점의 제반사
항을 고려한 감정평가

2. 최종합의각서 체결을 위한
재산평가: 제1항제2호의 정부
출자기업체에 매각한 금액

⑥ 국방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
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상의 기
한 내에 광주 군 공항 대체시
설을 기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
시행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
하여 광주 군 공항 대체시설의
기부 및 인도 등 필요한 조치
를 명할 수 있다.

제24조(이행강제금) ① 국방부장
관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이행
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이행
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
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명
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
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
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
전사업 합의 당시 군 공항 대
체시설 가액 100분의 20의 이
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국방부장관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